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25
----------	------

제출연월일 : 2021. 4.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집중하여 협의·자문 할 수 있는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 및 임기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로 명칭 변경
- 나.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하남시 양성평등 위원회 대행 조항 삭제 (안 제21조제2항)
- 다.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회의 조항 마련(안 제21조의 2, 3)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여성친화도시 지정)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3. 4. ~ 2021. 3. 24. [20일간]

나. 의견 및 검토결과 : 덧붙임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로 한다.

제4장의 제명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 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및 도시재생, 일자리, 교육, 정보통신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

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3(회의)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위원회” 를 “협의체” 로,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서 명		여성보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팀장 직위·성명	여성가족팀장 정유정
	담당자 성명·전화	서해림 (790-620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u>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u>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20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 ----- <u>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1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u>여성친화도시조성 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p> <p>1. ~ 6. (생략)</p> <p>② 본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p>	<p>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 ----- <u>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u>(이하“협의체”-----.</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신설></p>	<p><u>제21조의2(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민관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선출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및 도시재생, 일자리, 교육, 정보통신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신 설></p>	<p>제21조의3(회의) ① 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p> <p>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협의체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협업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u>시장은 협업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p>
<p>제22조(실비변상) 위촉위원과 <u>위원회</u>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2조(실비변상) ----- <u>협업체</u> -----</p> <p>-----</p> <p>----- 「<u>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p> <p>-----.</p>

관계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및 검토결과

조 항	<p>제 21조(구성 및 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수당지급 관련
제출자 및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의견(댓글) : 임** 등 483명 - 팩스 : 김** 등 79건 - 이메일 : 박** 등 19건 ○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반대 - 조례제정이 가능한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9조)이거나, ②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조례에 위임한 경우에만 제정가능 여성친화도시 원안이 ①과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정권한이 없음에도 발의되었음. 그러므로 위법이고 양성평등 부정하므로 위헌임. -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미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20명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임 -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 해서 사회적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 단체와 조직을 강화해주는 법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의 단체와 조직 강화해주는 법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부서 검토 결과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남시에서는 2020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2021~2025년까지 여성친화도시 1단계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돌봄 및 안전, 사회참여 등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서, 하남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획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위촉할 계획입니다.

<p>조 항</p>	<p>제 21조(구성 및 임기)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수당지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없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적 여성우월주의자들의 단체와 조직 강화해주는 법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 여성친화도시는 남녀평등이 아니고 여성을 이용하는 조례이며 남자와 여자를 편 가르기 하는 정책임 • 본 조례 4조에서는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이 참여하도록 제정된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 전문가, 관련단체 등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하남시의 지역사회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려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여 당초 목적에 맞는 하남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